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9.

발 의 자 : 권향엽·김용만·정진욱
진성준·이수진·허성무
어기구·곽상언·강준현
문금주·백승아·이주희
소병훈·손 술·오세희
박희승·박선원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다수의 법률은 ‘성적 수치심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·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,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·공포·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.

이와 관련하여,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‘성적 수치심’이라는 용어를 ‘성적 불쾌감’으로 변경한 바 있음.

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‘성적 수치심’이라는 표현을 ‘성적 불쾌감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).

법률 제 호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다목 중 “성적 수치심”을 “성적 불쾌감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수치심”을 “불쾌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3의2. (생 략)	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4. “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”란 아동·청소년, 아동·청소년의 성(性)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·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·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, 직무·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·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<u>성적 수치심</u>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	다. ----- ----- ----- <u>성적 불쾌감</u> ----- -----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의2(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)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성적 욕망이나 <u>수치심</u>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제15조의2(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불쾌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